제1항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(이용대상)

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 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
1.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운 자(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-5등급, 인지지원등급)
2.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
3.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4.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
제14조(이용정원, 이용절차 및 모집방법)

1. 센터의 이용정원은 다음과 같다.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 ① 주야간보호 : 129명
   ② 방문요양 : 정원 없음
   ③ 단기보호 : 9명
2.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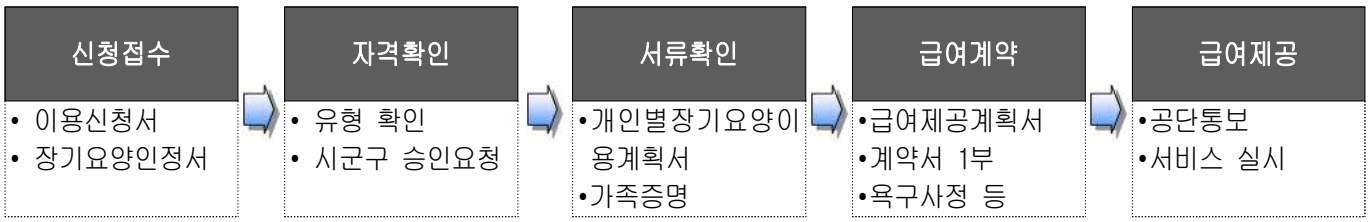

3. (이용자 모집방법)
   모집방법은 **온라인, 오프라인**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급여종류를 홍보한다.

이용자	홍보방법
온라인	공단사이트, 블로그, 밴드 , 홈피 등
오프라인	홍보지(리플렛) 및 인근장기요양기관 연계 협력 등
기 타	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, 직접홍보

① 관할지역 등의 장기요양기관(시설, 재가)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.
② 공단사이트, 블로그, 밴드, 홈피 등을 이용한다.
③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 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.
④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.
⑤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등에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.
⑥ 기관에 대한 홍보 내용을 제공할 경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정한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